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
조문별 제개정 이유서

1. 부탄 판매부과금 한시적 면제(안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)

가. 개정 이유

- 최근 액화석유가스 가격상승으로 인한 서민·영세자영업자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,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아니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부탄의 판매부과금 면제액(62.283원/kg)만큼 국내 부탄의 가격 인하 기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